대전직할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73

제출년월일: 1994. . . . 제출자: 대전직할시교육감

1. 제안이유

교육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직할시립학교중 분교장 통ㆍ폐합에 따라 폐지되는 분교장의 명칭과 위치 등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대전직할시립학교설치조례 제2조의 별표 1의2 및 별표 1의4 명칭과 위치란 의 아래 내용을 삭제함.

구분	명 청	위 치
쿡	산시국민학교어남분교장	대전직할시 중구 어남동 52-1
	대덕국민학교한등분교장	대전직할시 유성구 화암등 174

대전직할시조례 제 호

대전직할시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직할시립학교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1의2 국민학교(중구)표의 명칭란중 "산서국민학교" 다음의 "산서국민학교어 남분교장"을 삭제하고, 동표의 위치란중 "대전직할시 중구 목달동 89" 다음 의 "대전직할시 중구 어남동 52-1"을 삭제한다.
- 별표 1의4 국민학교(유성구)표의 명칭란중 "유성국민학교" 다음의 "대덕국민학교 탄동분교장"을 삭제하고, 동표의 위치란중 "대전직할시 유성구 장대동 155-1" 다음의 "대전직할시 유성구 화암동 174"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전직할시립학교설치조례 신ㆍ구조문 대비표

(별표 1의 2) 국민학교(중구)

6 1 49				계	정	안
명	청 ·	위 치	명	청	위	치
산 서 국	민학교	대전직할시 중구	삭	체	솩	A
납분	교장	어남동 52-1	- i			

(增표 1의 4)

국민학교(유성구)

	현	4			개	정	안
명	청	위	치	명	청	위	치
비덕국민	학교	대건직활시	유성구	Al	4	At-	al.
동분교	강	화암등 174		_			

大田直轄市立學校 設置 條例中 改正 條例案

審 査 報 告

1994. 2. 4. 文教社會 委員會

I. 審 査 經 過

가. 提出日字 및 提案者: 1994. 1. 25. 大田直轄市 教育監

나. 回附日字: 1994. 1. 25.

다. 上程日字: 第29回 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

第 3次 文教社會委員會 (94. 2. 4)

上程,審查,議決.

Ⅱ. 提案說明要旨(提案說明:管理局長)

1. 提案理由

教育法 第82條의 規定에 의하여 大田直轄市立學校中 分校長 統・ 廢合에 따라 폐지되는 分校長의 명칭과 위치등을 削除하고자 함.

2. 主要骨子

大田直轄市立學校設置條例 第2條의 별표 1의2 및 별표 1의4 명칭과 위치란의 아래 내용을 削除함.

구 분	명 칭	위 치
	산서국민학교 어남분교장	대전직할시 중구 어남동 52-1
국	대덕국민학교 탄동분교장	대전직할시 유성구 화암동 174

Ⅲ. 專門委員 檢討報告 要旨(專門委員:金鎭鎬)

- 이 改正 條例案은 신흥 주택지의 개발 및 도심 空洞化 현상 등 도심의 與件變化에 따라 그 규모면에서 존치가 不合理한 分校長을 폐지코자 하는 내용임.
- 본 條例의 개정으로 폐지되는 分校長은 중구 어남동에 위치한 산서국민학교 어남分校長과 유성구 화암동에 위치한 대덕 국민학교 탄동分校長으로써 어남 分校長은 4개 학년에 9명의 학생을 교육하고 있으며(교직원 3인), 탄동 分校長은 5개 학년에 24명의 학생을 교육하고 있음. (교직원 6인)
- 當初 分校長의 설치는 과거 人口가 急激히 증가하던 7~80년대 過密學級을 해소하고 학생들의 通學便宜提供등을 위하여 설립 되었으나 이제는 人口增加率의 鈍化와 移農現象등으로 학생수가

급격히 감소되는 추세에 있어 分校의 교육적 측면이나 운영적 측면등을 고려할때 부분적으로 分校存置의 필요성이 재검토 되 어야 하는 시점에 와있다 하겠음.

○ 따라서 本 改正 條例案은 이러한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라 그 존치가 불합리한 分校長을 폐지하려는 것으로써 分校 운영의 단점 즉 複式修業의 운영에 따른 교과과정의 불합리성, 소규모 학교에서의 장기간 교육에 따른 학생들의 競爭性 결여, 기타학교 운영적 측면에서의 經費節減效果등을 감안할때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本校와의 通學距離등을 감안하여 通學便宜를 제공할 수 있는 조치는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Ⅳ. 討 論 要 旨:省 略

V. 質疑 및 答辯要旨: 省 略

VI. 審 查 結 果: 原案대로 可決

VII. 其他 必要한 事項: 없 음